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07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이학영 · 염태영 · 한민수
이건태 · 전용기 · 박 정
김주영 · 백선희 · 조계원
김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사는”을 “이사(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담당 이사가 다른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를 말하며 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 의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으로 한다.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3(지속가능성 공시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내 법령 및 국내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체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이 경우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며,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기재는 주권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3.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해설의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측정보”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이라 한다) 또는 예측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예측정보”를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측 또는 전망과”를 “예측·전망 또는 추정과”로 한다.

제164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정정보등 및 예측정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5조제3항 중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감사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감사인”을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

증기관이”로 한다.

제169조의2 및 제1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 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6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주식 소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9조의3(지속가능성 인증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속가능

성 인증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0조제1항 중 “감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 또는 제36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로, “회계감사인”을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6편 제8장의 제목 “금융투자 관계 단체”를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6편 제8장에 제369조의2부터 제36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9조의2(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① 제169조의2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또는 투자자 등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4. 그 밖에 업무방법,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체계, 보상체계, 책임보험 가입 등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3(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결과를 기술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작성, 제출기한 및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4(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신뢰성 및 인증의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국내 법령 및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 및 중소기업시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69조의5(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의 금지행위)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주식보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인증 업무를 수행중인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종속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증 대상 사업연도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

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제369조의6(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그 인증기관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 투입인력 및 시간, 임원 보수, 임원의 징계 내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7(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69조의8(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

가능성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록한 경우
2. 제369조의2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3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경고
4. 주의
5. 고발 및 수사요청
6.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1년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4. 주의

5.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4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4(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1항 중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를 “제42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29조의4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를 “제429조의2, 제429조의3 및 제429조의4에”로 한다.

제444조제13호라목 중 “사업보고서”를 “사업보고서(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5까지를 각각 제19호의3부터 제19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6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445조제22호의2를 제2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1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41의2. 제3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69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한 자

4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9조의2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9조의2,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6: 2028년 1월 1일
2. 제369조의2 및 제369조의4: 2027년 7월 1일
3. 제369조의5, 제369조의7 및 제369조의8: 2027년 7월 1일

제2조(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속가능성 공시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2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제162조, 제164조, 제429조 및 제4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에 의한 경우는 제162조, 제164조 및 제429조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u>이사</u> 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u>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이사(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담당 이사가 다른 경우, 지속가

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
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
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
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
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

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를 말하며 해당 이사
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4호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 의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

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
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
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
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신설>

-----반기보고서
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
분기보고서-----제3호, 제
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3(지속가능성 공시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공시기
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
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의 공시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내 법령 및 국내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
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체
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
표. 이 경우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며, 기업 가치사슬 전
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기
재는 주권상장법인의 자산총
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3.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속가능성 관련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전
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생략)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하거
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을 정
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
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해설의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4. (생략)

③ ~ ⑤ (생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이라 한다) 또는 예측정보-----.

1.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

2. 예측·전망 또는 추정-----

3.·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
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
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경우.
다만,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
항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
에 따라 추정정보등 및 예측
정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 없이 기재 또는 표시된 경
우는 제외한다.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_____

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감사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

④ -----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제169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신 설>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69조의 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주식 소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9조의3(지속가능성 인증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 ----- ----- ----- ----- -----
---	--

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③ (생략)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신설>

-----감사보고서 또는
제36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속
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보고서

회계감사인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장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제369조의2(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의 등록) ① 제169조의2에 따
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지속가
능성 인증업무”라 한다)를 영
위하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지속

가능성 공시대상법인 또는 투자자 등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4. 그 밖에 업무방법,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체계, 보상체계, 책임보험 가입 등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

<신 설>

<신 설>

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3(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결과를 기술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의 작성, 제출기한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4(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신 설>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신뢰성 및 인증의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국내 법령 및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 및 중소기업시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69조의5(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등의 금지행위)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및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주식보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해 인증업

<신 설>

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인증 업무를 수행중인 지속 가능성 공시대상법인(종속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증 대상 사업연도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제369조의6(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신 설>

<신 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에 업무보고서를 증권선물위
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그
인증기관의 상호, 사업내용, 재
무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 투입
인력 및 시간, 임원 보수, 임원
의 징계 내역, 그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 및 제2
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
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7(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
한다)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
다.

제369조의8(지속가능성 인증기관
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
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369조의2제1
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록한 경우

2. 제369조의2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3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신 설>

중지명령

3. 경고

4. 주의

5. 고발 및 수사요청

6.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1년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4. 주의

5.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는 지속가능성 인
증기관 및 그 임직원 등에 대
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신 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제429조의4(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

----- 제42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29조의4에-----

② -----

--- 제429조의2, 제429조의3 및 제429조의4에-----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 다. (생략)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

제444조(벌칙)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사업보고

서

마. ~ 사. (생략)

14. ~ 19. (생략)

<신설>

19의2. ~ 19의5. (생략)

20. ~ 29.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2. (생략)

<신설>

서(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정보는 제외한다)

마. ~ 사. (현행과 같음)

14. ~ 19. (현행과 같음)

19의2. 제16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19의3. ~ 19의6. (현행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5까지와 같음)

20. ~ 29.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

1. ~ 22. (현행과 같음)

22의2. 제1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u>22의2.</u> (생략)	<u>22의3.</u> (현행 제22호의2와 같음)
23. ~ 41. (생략)	23. ~ 41. (현행과 같음)
<u><신설></u>	<u>41의2. 제3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69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한 자</u>
<u><신설></u>	<u>4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9조의2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을 한 자</u>
42. ~ 48. (생략)	42. ~ 48. (현행과 같음)